

의안번호	2202097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4. 07. 09.
추계번호	24A1363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	· 제1항제1호¹⁾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<u>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</u>(제2항) ※(현행) 지원할 수 있음 → (개정안) 지원하여야 함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<u>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</u>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2(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의 투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
- 1) 법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·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1.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국가첨단전략산업¹⁾ 기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 - 개정안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, 현행법에 따라 지원 중인 관련 사업이 확장될 경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데, 이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반도체 2개, 이차전지 4개, 디스플레이 1개, 바이오 5개 등 총 12개²⁾이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중³⁾
 - 참고로 2024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한 ‘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융자 사업’ 예산 900억원이 신규 편성됨⁴⁾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게 될 경우 확대될 사업의 범위와 재정 투입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,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2022년 제정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12개가 아래와 같이 지정됨

1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의미하며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반도체 분야 4개 산업, 디스플레이 분야 5개 산업, 이차전지 분야 4개 산업, 바이오 분야 2개 산업 등 총 15개 산업임(2024.6. 기준)
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국가첨단전략산업”(이하 “전략산업”이라 한다)이란 전략기술을 연구·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.

2) [참고자료 1] 참조

3) [참고자료 2] 참조

4) 2024년도 신규 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(5076-320)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 분야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필요한 R&D 자금을 융자 지원함.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, 2024년도에는 45개 기업에게 평균 2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임

- (2022.2.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정
 - (2022.12.)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(~2023.2.)
 - (2023.7.)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(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 등 의결)
반도체 2개, 이차전지 4개, 디스플레이 1개 단지 지정
 - (2024.6.) 바이오 5개 단지 지정
- 2024년도에는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, 상세 내역은 특화단지내 용수공급시설을 적기에 준공하기 위한 공사·설계·감리비(포항), 전력공급시설 구축 비용(울산), 산단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시설교량 건설 비용(구미) 등임. 또한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(소부장 등 공급·중소중견기업)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⁵⁾을 통해 선도기업(수요·대기업)⁶⁾의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음
 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국비 지원은 초기 단계로, 향후 추가로 지정될 특화단지의 위치 및 기반시설 구축 현황에 따라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현재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관한 계획이 부재하여 신규로 지정될 특화단지의 위치, 선도기업 여부, 기반시설 구축 현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확대될 사업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곤란함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* [참고자료 1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(12개) 현황

[참고자료 1-1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현황

* [참고자료 2] 현행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현황

5) [참고자료 2]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(R&D)(3171-419)

6) 선도기업: 생산시설 신·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특화단지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, 경제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큰 기업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지수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3750	zisu37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(12개)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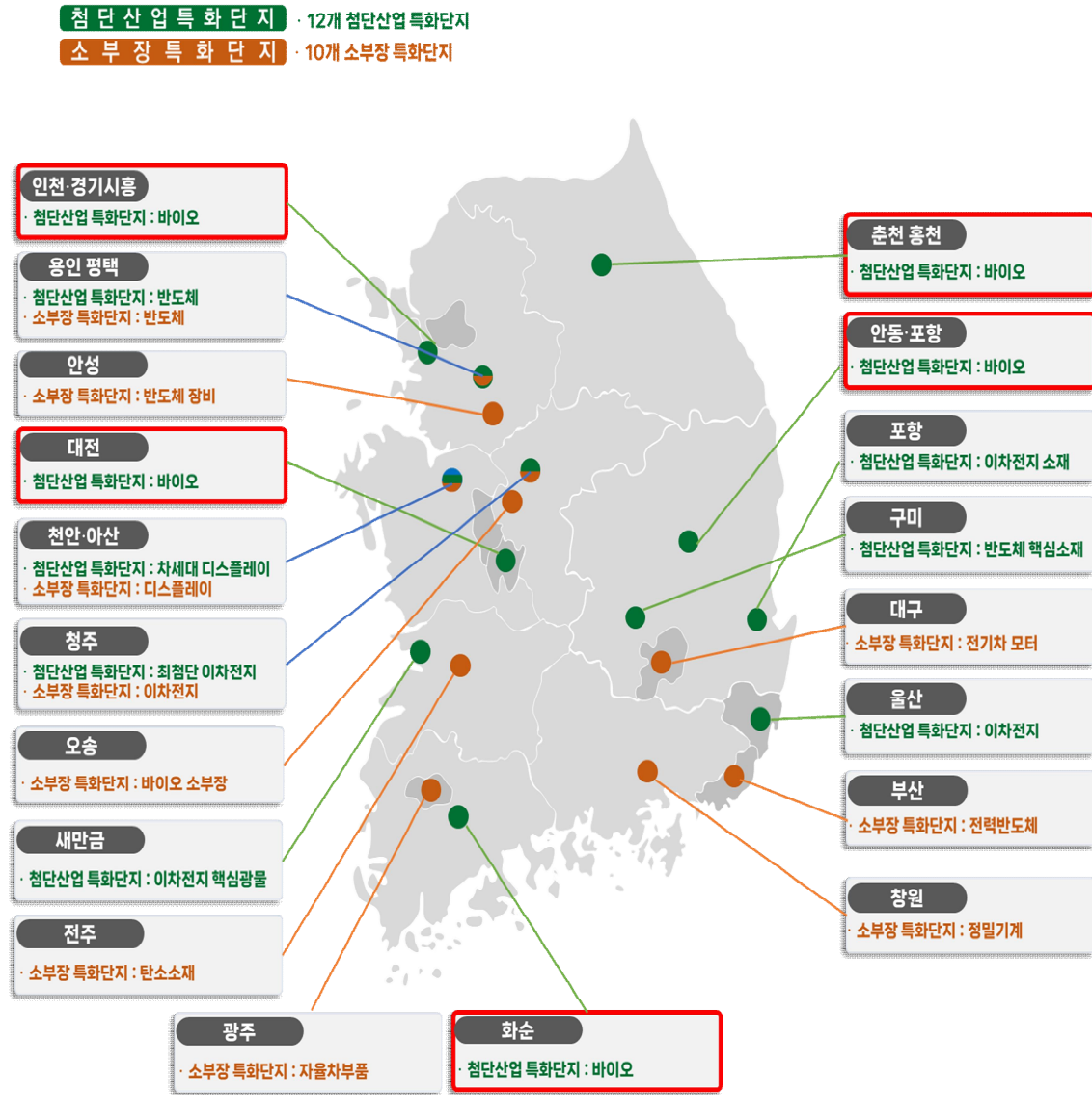
분야	지역	주요 내용	민간투자(기간)
반도체	용인·평택 ¹⁾	메모리 세계1위 수성, 시스템 점유율 10%로 확대	562.0조원(~'42)
	구미	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	4.7조원(~'26)
이차전지	청주	리튬황·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	4.2조원(~'26)
	포항	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(年 70만톤 이상)	12.1조원(~'27)
	새만금	핵심광물가공(전구체 등)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	6.4조원(~'27)
	울산	이차전지 포트폴리오(LFP, 전고체 등) 다변화 거점	7.4조원(~'30)
디스플레이	천안·아산	OLED 초격차 확보,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	17.2조원(~'26)
바이오	인천·경기 (시흥)	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	25.7조원(~'35)
	대전(유성)	혁신신약 R&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	6.6조원(~'37)
	강원 (춘천·홍천)	AI 기반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(위탁개발생산) 거점	2.7조원(~'40)
	전남 (화순)	국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생산 거점,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	1.2조원(~'33)
	경북 (안동·포항)		6.3조원(~'33)
합 계			650조원(~'42)

주: 1)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·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, 현재 가동 중인 인천·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3.7.20.), “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”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4.6.27.), “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”

[참고자료 1-1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현황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4.6.27.), “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”

[참고자료2] 현행법 제20조제1항제1호7)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세부사업명(코드) -내역사업명 ¹⁾	사업 개요	2024년도 (내역사업 예산 ¹⁾)
1	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사업 (3171-419) -테스트베드 구축 지원	·첨단전략특화단지 생태계 조성 및 연대협력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, 테스트베드 구축, 인력양성 종합 지원 ·(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내역 사업) 첨단전략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·장비 등 후방산업 제품의 신뢰성, 양산성능, 인증 사업화 등 실증 지원	4,500 (900)
2	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(3171-433)	·구미국가산단 1~3공단을 연결하는 노후된 기존 교량(구미대교)을 대체하고 산단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신설 교량 건설에 국비 지원	20,000
3	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 (3171-425)	·민간의 투자(FAB 등 생산시설 신·증설) 활성화 및 적기 준공 지원 등을 위해 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’로 지정된 산단 내 용수, 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 영일만 산단 내 용수공급시설 구축	15,406
4	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 (3171-431)	·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’로 지정된 산단 내 용수, 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(울산하이테크밸리산단 내) 전력공급시설 구축 지원	3,750
5	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 호기반조성 (3133-307) -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	·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 및 특화단지 기반확충, 세액공제심의 등 기반 조성을 지원 ·(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 내역 사업)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필수적인 산단 기반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적기 투자 지원, 제조능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	1,608 (200)

주: 1)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 내역사업 단위까지 작성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7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·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
1.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
2.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